

영등포구의회  
제 19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 
예방 및 지원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

2016. 4. 2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## 1. 경 과

의안 제137호로 2016년 4월 25일 박유규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 
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최근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 
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  
하거나,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 
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맞춤형  
서비스를 지원하여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 
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나. 지원대상 선정 방안 (안 제3조)

-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현황조사와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

다.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 
(안 제4조, 안 제6조)

라.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(안 제7조)

마.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(안 제8조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(주민의 자격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6. 4. 15. ~ 4. 21.)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○ 본제정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독사의 조기발견, 조기대응 등의 예방책을 마련하고,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조례안은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○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.

1)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 조사와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토록 함.

2)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함.

- 추진계획에는 현황조사를 통해 등록·관리체계를 구축하고

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사항,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사항, 고독사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둬.

3)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.

4) 지원내용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,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 등의 설치,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,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과의 연계와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○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, 보건·복지 서비스 연계 및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위법인 「노인복지법」 범위 안에서 최소한 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『노인복지법』

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[제2조](#)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[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](#).

[본조신설 2007.8.3.]

### ■ 『지방자치법』

**제12조(주민의 자격)**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.